

수행과제명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III): 작업장에서 여성안전을 중심으로
 과제책임자 김영택 연구위원 (Tel: 02-3156-7177 / E-mail: ytk@kwidmail.re.kr)

작업장에서의 여성근로자 보건안전 현황과 개선방안

초록

- 본 연구에서는 작업장에서 포괄적 개념의 여성근로자 안전 상황을 성인지적으로 고찰하고, 작업장에서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국내외 규정 및 정책에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얼마나 반영하였는지 살펴봄.
- 여성근로자로서 일하면서 안전과 건강에 문제가 생겼던 경험, 작업장 내 안전보건 위험요인, 안전보건교육 실태 및 요구, 생애주기별 요구 및 차별 경험을 심층 분석하였음.
- 연구 결과 여성근로자 작업장 보건안전 상황 및 건강상태는 남성근로자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성별 맞춤형 안전보건 정책으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해외의 작업장에서의 여성안전과 건강을 위한 규정 및 정책

- 양쪽 성별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

 - 핀란드-산업안전보건법
 - 독일-산업안전보건법
- 안전관련 위원회에 성별 최소비율 포함**

 - 동남아시아-Homenet SouthEast Asia 구성(지역 여성 NGO참여)
 - 호주-산안법 15조(안전위원회에 남녀 참석 명시)
-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시행**

 - 필리핀-A Business Case for Gender Fair Practice
 - 오스트리아-성인지적 관점에서 노동감독관 훈련 및 교육
- 성별 분리된 보호장비 개발 및 적용**

 - 호주-Sizing Up Australia 프로젝트
 - 캐나다-산업사고 예방 보호위원회 및 온타리오 여성부
 - 영국-평등법(Equality Act)에 따라 PPE의 작업복 크기 다양화
- 젠더 차이를 고려한 OSH조사 연구 및 OSH정책 적용**

 - 미국-국가 수준의 직업안전 건강 연구 프로그램 (The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 운영
 - 독일-성별분리 통계를 이용한 안전, 건강 불평등 포착 (NRW Institute of Health and Work)
 - 독일-하노버 병원(Hanover hospital)의 여성근로자 참여 연구 조사

1. 배경 및 문제점

- 본 연구에서는 작업장에서의 여성근로자 안전과 건강에 대한 국내외 규정과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근로환경조사 결과를 활용해 건강상태를 심층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분석결과, 작업장에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위험에 대한 반응 역시 다르게 나타남.
- 특히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작업장에서 다양한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정부와 사업주,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규정들이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사회적·심리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이에 대한 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 조사 및 분석결과

-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작업장에서의 다양한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정부와 사업주,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규정들은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사회적·심리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표준적인 (남성) 근로자상을 설정하여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안전과 건강에 대한 보호 규정임.
- 생애주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또한 남성 보다 여성 임금근로자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의 악화와 질병 이환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설명변인들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특성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t 값	유의수준
상수	1.725	0.024	.	70.778	0.000
사회인구학적변인					
연령	0.129	0.004	0.213	28.749	0.000
교육수준(고등학교 졸업 이하)	0.093	0.009	0.072	10.011	0.000
생애주기 단계 순	0.033	0.004	0.056	8.430	0.000
성 (여성 임금근로자)	0.071	0.009	0.054	8.312	0.000
근무지환경 변인					
사업장규모	-0.026	0.007	-0.025	-3.974	0.000
여성 집약	-0.017	0.009	-0.013	-1.985	0.047
고용형태(상용근로자)	-0.072	0.010	-0.047	-7.232	0.000
안전 환경 변인					
건강 및 안전 위험(경험 존재)	0.200	0.013	0.096	15.565	0.000
아픈데도 일함	0.208	0.010	0.125	20.499	0.000

특성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t 값	유의수준
폭력 안전 경험		0.056	0.015	0.023	3.691	0.000
F 값	유의수준	376.746		0.000		
R Square		0.134				

<표 2> 설명변인들이 질병 이환(이환 수 합)에 미치는 영향

특성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t 값	유의수준
상수		-0.164	0.054	.	-3.030	0.002
사회인구학적변인						
연령		0.174	0.010	0.132	17.520	0.000
교육수준(고등학교 졸업 이하)		0.257	0.021	0.090	12.420	0.000
생애주기 단계		0.024	0.009	0.019	2.772	0.006
성(여성 임금 근로자)		0.188	0.019	0.066	9.973	0.000
근무지 환경 변인						
사업장규모		0.010	0.014	0.005	0.712	0.476
여성 집약		0.007	0.019	0.002	0.384	0.701
고용형태(상용근로자)		-0.094	0.022	-0.028	-4.239	0.000
안전 환경 변인						
건강 및 안전 위험(경험 존재)		1.066	0.029	0.226	36.246	0.000
아픈데도 일함		0.865	0.023	0.229	37.513	0.000
F 값	유의수준	530.513		0.000		
R Square		0.175				

- ④ 각 생애주기 단계별 분석 결과, 작업장에서의 건강상태나 안전에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 여성 임금근로자 집단이거나 아픈데도 일한 경험이 있는 여성 임금근로자 집단은 생애주기 지속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의 악화와 질병 이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④ 작업장 위험 노출 중 근골격계 위험 노출은 전반적으로 여성 임금근로자가 남성 임금근로자 보다 높게 나타남.

 - ▶ 여성 집약적 산업에서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로 인한 근골격계 위험에 하루 중 절반 이상 노출되었거나(여성 30.6%, 남성 26.4%) 하루 중 1/4 노출된 비율은 여성 임금근로자가 남성 임금근로자 보다 높게 나타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여성 18.9%, 남성 18.1%).
- ④ 작업장 위험 노출 중 물리적 위험 노출 비율은 남성 임금근로자가 여성 임금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나나, 남성 집약형 산업에서 여성 임금근로자가 여성 집약형 산업에서 여성 임금근로자 보다 물리적 위험 노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인 경우 여성 임금근로자가 경험한 하루 중 절반 이상 진동 노출 비율이 40.0%로 나타남. 남성 집약적 산업에서 여성 임금근로자 하루 중 절반 이상 연기/분진 비율은 여성 집약적 및 혼합형 집약적 산업 특성의 여성 임금근로자 하루 중 절반 이상 연기/분진 노출 비율 보다 크게 나타남.

- ④ **요통, 상지근육통, 하지근육통, 두통/눈/피로, 우울감 질환 발생 등에서 여성 임금근로자가 남성 임금근로자 보다 높게 나타남.**

 - ▶ 서비스 종사자 및 기능원 및 기능 관련 종사자 여성 임금근로자의 요통 경험의 비율은 거의 20%에 이르고 있고, 단순 노무직 종사자의 요통 경험의 비율은 25% 이상임.
 - ▶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성별 및 직종별 상지근육통 발생 분포차이가 있는 집단은 전문가 및 관리직 종사자(남성 13.0%, 여성 16.8%), 사무 종사자(남성 9.6%, 여성 13.3%), 서비스 종사자(남성 17.7%, 여성 35.7%), 판매 종사자(남성 10.0%, 여성 16.0%), 기능원 및 기능 관련 종사자(남성 33.5%, 여성 44.6%),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남성 27.6%, 여성 36.9%), 단순 노무직 종사자(남성 15.1%, 여성 26.4%)인 것으로 나타남.

- ④ **폭력 안전인 경우 여성 임금근로자가 남성 임금근로자 보다 성차별, 성적관심, 성희롱 측면에서 피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남성 집약형 산업인 경우 남성 임금근로자 중 1.7%가 성차별 피해를 경험한 반면 여성 임금근로자 중 4.6%가 성차별 피해를 경험하였음.

- ④ **작업장에서 안전 정보 및 안전소통창구, 안전보건위원회 존재 여부 측면에서 남성 임금근로자 보다 여성 임금근로자가 불리한 작업환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안전 정보 및 안전 소통 창구 측면에서 살펴보면, 혼합형 산업(남성 17.7%, 여성 11.2%), 남성 집약 산업(남성 24.5%, 여성 14.7%)에서 일을 할 때 일과 관련하여 건강과 안전에 관한 위험요인 정보 제공 받음 정도 중 ‘매우 잘 받고 있음’ 비율이 여성 임금근로자가 남성 임금근로자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④ **안전실태조사 안전 인식 및 태도 관련 주요 분석 결과**

 - ▶ 일 관련 안전의식 수준은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 인식 수준이 높은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3.26으로 낮음과 높음의 중간인 ‘보통’으로 나타남.
 - ▶ 종사자 규모가 낮을수록, 비정규직일수록, 노동조합이 부재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작업장에서의 도구가 여성근로자가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여성 임금근로자 중 14.8%가 부적합하고 응답함. 작업장에서의 도구가 여성 근로자가 사용하기에 부적합으로 인하여 사고 경험 비율은 4.7%로 나타남.
 - ▶ 임신 여성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수칙 또는 위험요소에 대한 안내 실시 여부를 살펴 보면 그러한 안내를 받지 않았다는 비율이 83.3%로 나타남.

④ 포커스그룹 인터뷰 주요 분석 결과

- ▶ 여성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낙상과 미끄러짐임.
- ▶ 화상도 자주 경험하는 안전사고 중 하나인데, 제조업은 납땜 등을 할 때 사용하는 작업 도구로 인해, 학교급식종사자는 음식하면서 다루는 뜨거운 물이나 기름 등에 의해 잦은 화상 사고를 경험함.
- ▶ 여성노동자들은 매우 큰 중량물을 옮기지는 않지만, 식판이나 1리터 주사용액 같은 작은 물품들을 여러 개 반복적으로 옮기는 작업을 많이 함.
- ▶ 이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은 허리, 무릎, 팔, 다리 등의 근육을 무리하게 사용하여 다양한 부위의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함. 이러한 증상들은 일을 하는 동안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을 괴롭혀, 노동자들은 이를 골병, 고질병이라고 표현함.
- ▶ 여성노동자들은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었고, 이로 인한 두려움을 호소함. 제조업 종사자는 전자제품의 불순물을 닦을 때 사용하는 유기용제, 병원종사자는 간호사나 청소노동자 등 직종에 따라 병원에서 사용하는 항암제, 항생제 등 다양한 의약품과 청소할 때 사용하는 세제들, 급식종사자들은 식기를 세척하거나 조리실 내부를 청소할 때 사용하는 세제들의 유해함을 토로함.
- ▶ 병원은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병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감염성 환자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음. 그래서 청소노동자의 경우 그 환자가 어떤 감염성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상태로 청소를 하면서 에이즈환자의 주사바늘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함.
- ▶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은 고객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그 고객이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환자이거나 그 가족인 경우 고객이 부당한 행동을 하더라도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분위기로 인해 많은 심리적 갈등을 경험함.

3. 정책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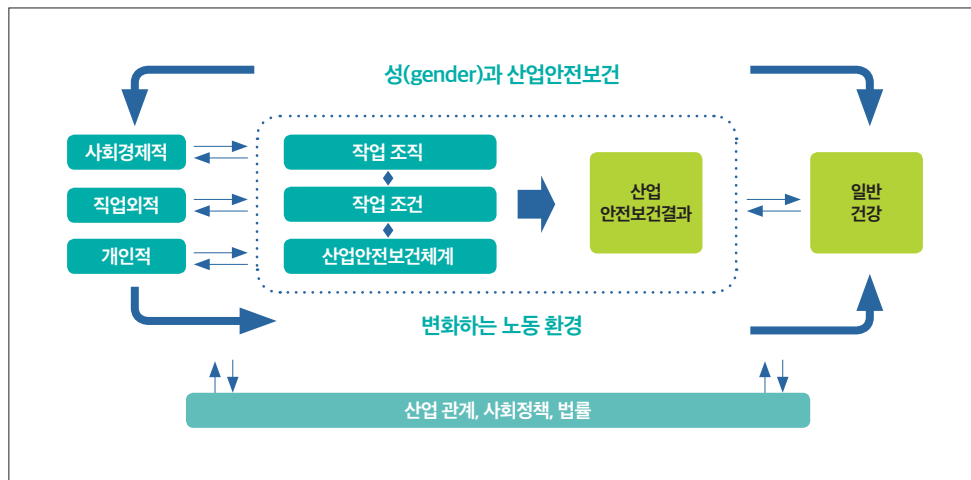
<표 3> 작업장에서의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개선방안

주체	내용
정부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규정과 정책 마련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기반한 안전 평가, 위험 예방이 이루어져야 함에 대한 포괄적 규정 *안전관리위원회에 성별 비율 포함 *남성과 여성 근로자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안전 가이드라인 및 안전교육 수행 *남성과 여성근로자의 신체에 적합한 보호장비 구축 및 제공에 대한 규정

주체	내용
고용주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한 안전 평가 및 위험 예방 *성인지적 관점의 안전교육 시행 *남녀를 모두 포함하는 안전건강 관련 운영위원회 구성 *안전관리자의 성별 *작업장 내 안전 평가 *남성 뿐 아니라 여성의 신체와 행동범위를 고려한 보호 장비 혹은 안전 장비 구비 *남성과 여성을 고려한 심리적 지원체계 마련
전문가 및 연구자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조사 연구 및 가이드라인 제시 *여성중심 산업에서의 여성의 안전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진행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진행 *남성 중심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진행 *남성과 여성 근로자들의 신체에 대한 조사 및 자료 축적

④ 여성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는 작업장 안과 밖의 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침([그림 1] 참조). 이러한 것들에는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심리적 작업조건, 고용 관계·경영방침 등의 작업조직, 산업안전보건체계, 직업 외의 생활과 사회정책 등이 포함됨(EUOSHA, 2003).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에서 젠더에 의한 안전보건문제를 해결하고자할 때에는 이 요인들 중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그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함.

[그림 1] 산업안전보건에 있어 성 차이의 영향



④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재 정비

- ▶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때 성별에 따라 차별받거나 간과 되지 않도록 법령안에 성별 요인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
- ▶ 안전보건교육은 작업별로 남녀 차이를 고려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을 위한 시설과 보호 장비를 갖추는 때는 성별 신체조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각 노동자들에게 적합한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

- ④ **산업안전보건관련 의사결정과정에 여성노동자 참여 보장**

 - ▶ 의사결정과정에 여성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재 각 사업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정 시 성별을 고려하여 여성노동자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④ **현장에서 작동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 ▶ 현재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은 온라인교육 등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서류에 서명만 하는 허위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수 있음. 특히, 여성노동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노동자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등 매우 취약한 실정임.

- ④ **여성노동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강화**

 - ▶ 여성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과 가정을 유지해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 강화

- ④ **젠더 차이를 고려한 실질적 위험성 평가**

 - ▶ 여성의 작업환경은 남성보다 덜 위험하다는 인식으로 그간 많은 관심을 받아오지 못한 것이 현실임.
 - ▶ 젠더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의 작업위험요인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는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에 따라 여성 작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선 방안**

 - ▶ 시행규칙 제25조의2: 사업장 성별 근로자 분포 비례 고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 시행규칙 제13조 안전관리자, 제13조 3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 10조 관리감독자 업무 추가: 성별 근로자 특성(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 고려

참고 자료

ILO. "10 Keys for Gender Sensitive OSH Practice-Guidelines for Gender Mainstreaming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LO. 2013